

차. 인가된 실시계획에 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

1)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가) 공람기간: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

나) 공람장소

-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(☎ 02-2133-1536)
- 강서구청 마곡개발과(☎ 02-2600-5280)
-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단(☎ 02-3410-7686)

카.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: 변경없음

타. 「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: 변경없음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74호

『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』

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62호(2016.7.1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반포 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「주택법」(법률 제6916호)부칙 제9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법률 제6852호)부칙 제5조제3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『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』을 경미한 변경 지정(결정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장

‘1.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
가. 명칭: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

나. 위치: 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
다. 면적

구분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
기정	반포 아파트지구	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	1,548,924.6㎡	-	1,548,924.6㎡	

2. 주요 변경내용

가.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7.04.19) 결과(수정 가결)에 따른
정비기반시설 등 일부 변경

3.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토지이용계획

1) 지구 면적표

구분	합계	1주구	2주구	3주구
변경전	1,548,924.6㎡	238,490.9㎡	388,886.8㎡	921,546.9㎡
변경후	1,548,924.6㎡	238,490.9㎡	388,886.8㎡	921,546.9㎡
비고	“변경 없음”	“변경 없음”	“변경 없음”	“변경 없음”

2) 토지이용계획

가)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: 변경

구 분		기 정		변경 후		비고
		면적(㎡)	비율(%)	면적(㎡)	비율(%)	
계		1,548,924.60	100.0	1,548,924.60	100.0	변경 없음
주거 용지	소 계	941,061.26	60.8	936,850.56	60.5	감) 4,210.70㎡
	주택용지	941,061.26	60.8	936,850.56	60.5	감) 4,210.70㎡
중심 시설 용지	소 계	95,852.30	6.2	95,852.30	6.2	변경 없음
	지구중심	37,698.50	2.4	37,698.50	2.4	변경 없음
	주구중심	23,965.80	1.6	23,965.80	1.6	변경 없음
	분구중심	34,188.00	2.2	34,188.00	2.2	변경 없음
도시 계획 시설 용지	소 계	501,161.74	32.3	501,360.44	32.3	증) 198.70㎡
	도로용지	228,184.54	14.7	228,184.54	14.7	변경 없음
	공원용지	56,568.50	3.6	59,733.20	3.8	증) 3,164.70㎡
	녹 지	72,549.70	4.7	69,583.70	4.5	감) 2,966.00㎡
	광 장	972.90	0.1	972.90	0.1	변경 없음
	학교용지	131,617.60	8.5	131,617.60	8.5	변경 없음
	공공청사	11,268.50	0.7	11,268.50	0.7	변경 없음
기타	소 계	10,849.30	0.7	14,861.30	1.0	증) 4,012.00㎡
	종교용지	10,849.30	0.7	10,849.30	0.7	변경 없음
	문화시설	-	-	4,012.00	0.3	증) 4,012.00㎡

- 나) 주구별 토지이용계획
- 1주구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
 - 2주구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
 - 3주구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 분		기 정		변경 후		비고
		면적(㎡)	비율(%)	면적(㎡)	비율(%)	
계		921,546.90	100.0	921,546.90	100.0	변경 없음
주거 용지	소 계	579,786.36	62.9	575,575.66	62.5	감) 4,210.70㎡
	주택용지	579,786.36	62.9	575,575.66	62.5	감) 4,210.70㎡
중심 시설 용지	소 계	35,060.70	3.8	35,060.70	3.8	변경 없음
	지구중심	-	-	-	-	변경 없음
	주구중심	8,243.10	0.9	8,243.10	0.9	변경 없음
	분구중심	26,817.60	2.9	26,817.60	2.9	변경 없음
도시 계획 시설 용지	소 계	302,807.84	32.8	303,006.54	32.9	증) 198.70㎡
	도로용지	154,153.14	16.7	154,153.14	16.7	변경 없음
	공원용지	33,027.30	3.6	36,192.00	4.0	증) 3,164.70㎡
	녹 지	43,840.00	4.8	40,874.00	4.4	감) 2,966.00㎡
	광 장	972.90	0.1	972.90	0.1	변경 없음
	학교용지	64,196.80	7.0	64,196.80	7.0	변경 없음
	공공청사	6,617.70	0.7	6,617.70	0.7	변경 없음
기타	소 계	3,892.00	0.4	7,904.00	0.8	증) 4,012.00㎡
	종교용지	3,892.00	0.4	3,892.00	0.4	변경 없음
	문화시설	-	-	4,012.00	0.4	증) 4,012.00㎡

나. 건축물 규제사항 : 변경

- 1) 용도규제 : 변경 없음
- 2) 건축선의 지정 : 변경
 - 1주구(변경 없음)
 - 2주구(변경 없음)
 - 3주구(변경)
 - ▶ 건축한계선
 - 나루터로4길변 : 6m 이격
 - 그 외 :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
- 3) 건폐율 규제 : 변경 없음
- 4) 용적률 규제 : 변경 없음
- 5) 세대밀도 : 변경 없음
- 6) 건축물의 높이 : 변경 없음
- 7)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: 변경 없음

- 8)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: 변경 없음
 9) 주택규모규제(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) : 변경 없음

다.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계획 : 변경

- 1) 지구중심 : 변경 없음
 2) 주구중심 : 변경
 - 주구중심 구분 및 면적

구분	계		1주구		2주구		3주구		비고
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
변경전	9	23,965.8	3	8,445.2	2	7,277.5	4	8,243.1	
변경후	8	23,965.8	3	8,445.2	2	7,277.5	3	8,243.1	
비고	감) 1개소	-	-	-	-	-	감) 1개소	통합배치 (규모 동일)	

※ 정비구역 확대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기존 주구중심을 통합배치하되,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

- 용도 : 변경 없음
 - 층수 : 변경 없음
 - 건폐율 : 변경 없음
 - 용적률 : 변경 없음
 3) 분구중심 : 변경 없음
 4) 기타건축물 : 변경 없음

- 라.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 마. 경관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 바.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 사. 사업시행계획 : 변경 없음

4.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한신4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	서초구 잠원동 60-3번지 일대	144,972.1	증)13,583.7	158,555.8	

나. 정비계획 변경 내용

1) 용도지역 : 변경 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158,555.8	-	158,555.8	100.0	-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58,555.8	-	158,555.8	100.0	-

2)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144,972.1	증) 13,425.7	158,555.8	100.0	• 녹원한신 및 베니하우스 통합개발 동의에 따라 사업구역 확대
정비 기반 시설	소 계	21,064.0	증) 2,816.0	24,038.0	15.2	-
	도 로	10,006.0	증) 2,617.3	12,623.3	8.0	• 구역 확대에 따라 나루터로 4길 추가 편입
	공 원	6,500.0	증) 3,164.7	9,664.7	6.1	•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구역 경계부로 이동 배치
	녹 지	4,716.0	감) 2,966.0	1,750.0	1.1	• 나루터로33길변 완충녹지 삭제 - 건축한계선(6m)으로 대체 •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폭원유지 위해 완충녹지 신설(A=1,750㎡)
주택용지		115,486.5	증) 6,597.7	122,084.2	77.0	• 구역확대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용지 면적 변경
중심 생활 시설 용지	소계	8,421.6	-	8,421.6	5.3	-
	주구중심1	1,828.0	-	4,493.0	2.8	• 기존 2개의 주구중심 통합배치 (규모는 동일하게 유지)
	주구중심2	2,665.0				
	분구중심	3,928.6	-	3,928.6	2.5	-
기타	문화시설	-	증) 4,012.0	4,012.0	2.5	• 문화시설을 별도 획지로 구분하여 기부채납(토지+건축물)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) 교통시설

- 도로

○ 도로 결정 조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A	20	집산 도로	1,386 (424)	잠원동 84	잠원동 104	일반 도로	-	(2008. 11. 13.)	
기정	소로	2	A	8	국지 도로	92 (38)	잠원동 104-8	잠원동 103	일반 도로	-	(2008. 11. 13.)	

※ 연장의 ()는 구역 내 수치임

나) 공간시설

- 공원

○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㉓	공원	소공원	잠원동 58-24일원	2,500.0	증)3,198.5	5,698.5	서울시고시 제1685호 (1995. 5. 20.)	공원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
변경	㉔	공원	소공원	잠원동 60-6일원	2,000.0	증)280.0	2,280.0	서울시고시 제1685호 (1995. 5. 20.)	공원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
변경	㉕	공원	소공원	잠원동 60-3일원	2,000.0	감)313.8	1,686.2	서울시고시 제1685호 (1995. 5. 20.)	공원형태 및 면적 변경

○ 공원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㉓	소공원	●공원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- 위치 : 잠원동 58-22 ⇒ 58-24 - 면적 : 2,500.0㎡ ⇒ 5,698.5㎡	●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업구역 남측 경계부로 이동 및 면적 확대
㉔	소공원	●공원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- 위치 : 잠원동 60-3 ⇒ 60-6 - 면적 : 2,000.0㎡ ⇒ 2,280.0㎡	●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업구역 북측 경계부로 이동 및 면적 확대
㉕	소공원	●공원형태 및 면적변경 - 면적 : 2,000.0㎡ ⇒ 1,686.2㎡	●구역 확장 및 주구중심 통합에 따라 공원형태 및 면적 조정

- 녹지

○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㉗	녹지	완충녹지	잠원동 60-3 일원	6,068.8	감)4,217.4	1,851.4	서울시고시 제2885호 (1981. 11. 13.)	
	㉘	녹지	완충녹지	잠원동 58-22 일원	-	증)1,750.0	1,750.0	-	

※ 완충녹지(㉘) 면적은 구역 내 면적임

○ 녹지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㉓	녹지	대상지 내 완충녹지 폐지 - 6,068.8㎡ → 1,851.4㎡ (감 4,217.4㎡)	가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지 내 완충녹지 폐지 - 건축한계선(6m)을 지정하여 기존의 완충녹지 지정 취지는 유지 (대지 내 공지로 활용)
㉔	녹지	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추가 확보(1,750.0㎡)	고속도로변 완충녹지의 폭원유지를 위해 구역 동남측으로 완충녹지 추가 확보

4) 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

구분	문화시설	
	부지면적(㎡)	연면적(㎡)
부지 내	4,012.00	25,131.00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부지 내 공공기여(기부채납) 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변경

구분		기준근거	기준(㎡)	계획(㎡)	비고
부대 시설	관리사무소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8조 - 50세대 이상의 경우, $10\text{㎡} + (\text{세대수} - 50) \times 0.05\text{㎡}$ 이상 확보 : 191.75㎡ 이상	191.75㎡ 이상	461.41㎡	-
주민 공동 시설	총괄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 제8조의 4 - 1,000세대 이상의 경우, 500㎡에 세대당 2㎡를 더한 면적에 1.25배한 면적 - 포함 시설(500세대 이상의 경우) :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, 주민운동시설, 작은도서관	9,837.5㎡ 이상	14,231.88㎡	주민공동시설 (건축물) 전체면적
	경로당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 제8조의 4 - 1,500세대 이상의 경우, 500㎡ 이상	500㎡ 이상	607.28㎡	-
	어린이집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 제8조의 4 - 1,500세대 이상의 경우, 725㎡ 이상	725㎡ 이상	2,145.29㎡	-
	작은도서관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 제8조의 4 - 1,500세대 이상의 경우, 298㎡ 이상	298㎡ 이상	524.18㎡	-
	주민공동시설	-	-	7,850.95㎡	-
	경비실	-	-	220.00㎡	-
	유치원	-	-	2,884.18㎡	-

6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가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등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144,972.1	서초구 잠원동 60-3번지 일원	27	1 (뉴타운 상가)	-	26	-	
변경	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158,555.8	서초구 잠원동 60-3번지 일원	30	1 (뉴타운 상가)	-	29	-	

※ 존치 1동은 분구중심 내 뉴타운상가임

나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구분		토지이용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예정법적상한		
기정	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144,972.1	주택용지	115,486.5	잠원동 60-3번지 일원	주택용지	20이하	279.15이하	-	35층	
			주구중심1	1,828.0		주구중심	50이하	250 이하	-	5층	
			주구중심2	2,665.0		주구중심	50이하	250 이하	-	5층	
			분구중심	3,928.6		분구중심	존치				
변경	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	158,555.8	주택용지	122,084.2	잠원동 60-3번지 일원	주택용지	20이하	278.68이하	299.99이하	35층	
			주구중심	4,493.0		주구중심	50이하	250 이하	-	5층	
			분구중심	3,928.6		분구중심	존치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●주택공급계획 ※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적용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127호)								
			구 분 (전용면적)		세 대 수		비 율(%)		비 고		
			합계		3,685		100.0				
			45㎡이하		240		6.5		소형주택 206세대 포함		
			60㎡이하		1,437		39.0				
			60~85㎡이하		1,589		43.1				
			85㎡초과		419		11.4				
			●건설면적 비율 : 전용면적 85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88.6%								
심의완화사항			●용적률 완화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) - 정비계획용적률(278.68%) → 예정법적상한용적률(299.99%) ⇒ 임대주택 용적률 : (299.99% - 278.68%) / 2 = 10.66%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0조의 3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심의 완료(2017년 4월 19일)								
			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●건축한계선 - 나루터로4길변 : 6m 이격 - 그 외 :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					

구분	구역구분		토지이용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예정법적상한		
기타사항	전면공지	●나루터로4길변 건축한계선으로 후퇴되는 부분(6m)은 전면공지로 조성(보도연접형) -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조성으로 보행공간 확보 ●조성지침 준수시 공개공지로 인정 ※ 20차 남측 지역은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하는 전면공지 중 2.5m를 보도로 조성									
		●신반포로 33길변 건축한계선으로 후퇴되는 부분(3m)은 보도로 조성									
	공공보행통로	●단지 중앙 통경축을 활용하여 20m 범위 내 최소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									
	단지내 통경축	●단지 중앙부에 단지내 통경축 최소 20m 이상 확보									
	지구 통경축	●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대상지를 통과하는 지구통경축(대상지 북동측)은 최소 15m이상 확보									

다) 용적률 산정

구분	산정내용				
토지이용계획	정비구역면적	획지(주택용지)면적	계획정비기반시설		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·공유지
			토지	건축물(환산부지면적)	
	158,555.8㎡	122,084.2㎡	28,050.0㎡	4,244.0㎡	11,498.1㎡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● 순부담 면적 = 계획기반시설 면적(20,795.8㎡ + 11,498.1㎡) - 기존기반시설 면적(11,498.1㎡) - 폐지기반시설 면적(908.5㎡) = 19,897.3㎡ ● 순부담 비율 = {(계획기반시설 + 공공시설 설치 환산 부지면적) - 존치되는 기반시설(국공유지)} / (사업구역면적 - 존치되는 기반시설(국공유지)) × 100% = {(28,050.0㎡ + 4,244.0㎡) - 11,498.1㎡} / (158,555.8㎡ - 8,421.6㎡ - 11,498.1㎡) × 100% = 15.00%				
건축물 기부채납	● 문화시설 - 연면적 : 25,131㎡, 토지 : 4,012㎡ - 환산부지면적 = 공사비(문화 및 집회시설)1) × 연면적 ÷ 부지가액 = 2,698,000원/㎡ × 25,131㎡ ÷ 15,974,880원/㎡ = 4,244㎡ ※ 1) 2015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(서울시) 중 문화 및 집회시설 단가 적용 ※ 부지가액(원/㎡) : 2015년 기준 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(7,987,440원/㎡ × 2배)				
정비계획 용적률 산정	● 기준(허용)용적률 = 230% ● 정비계획용적률 = 기준용적률 × (1+1.3 × α) = 230% × (1+1.3 × 0.1628) = 278.68%				
예정법적상한 용적률	●예정법적상한용적률 = 299.99% 이하(⇒건축계획(안)의 용적률 299.99%)				

※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

7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
8) 정비사업의 시행계획

사업 시행방법	사업시행 예정시기	사업시행자	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주택재건축 정비사업	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	현황 : 2,898세대 계획 : 3,685세대 (증) 787세대	6:4재건축 적용

※ 세대수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

9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
10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지 구분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합계		134,517.8	－	134,517.8	
획지	주택용지	122,084.2	잠원동 60-3번지 일원	122,084.2	주택용지
획지	주구중심	4,493.0		4,493.0	주구중심
획지	분구중심	3,928.6		3,928.6	분구중심
획지	문화시설	4,012.0		4,012.0	문화시설

11)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건립위치	부지면적(㎡)	세대수	세대규모		비고(연면적)
			전용	공급	
잠원동 60-3번지 일원	158,555.8㎡	206세대	43.33㎡	63.25㎡	계획 : 13,029.5㎡ (기준 : 13,014.2㎡ 이상)

○ 산출근거

구분		산출근거	용적률(%), 면적(㎡)	비고
기준용적률		●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	230%	
정비계획 용적률		●기준용적률 × (1+1.3 × α) = 230% × (1+1.3 × 0.1628)	278.68%	
예정법적상한 용적률		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	299.99%	
소형 주택 면적 산정	용적률 증가분	●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 = 299.99% - 278.68%	21.31%	
	증가된 용적률의 50%	●21.31% × 50%	10.66%	
	의무연면적	●계획대지면적 × 증가용적률의 1/2이상 = 122,084.2㎡ × 10.66%	13,014.2㎡	
재건축 소형주택 확보 계획		●계획연면적 = 63.25㎡ × 206세대	13,029.5㎡	

5.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

▶ 수정가결

<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>

- 구역계 : 158,633.8㎡

- 정비기반시설계획

: 토지(16,563.8㎡) - 도로, 공원, 녹지, 문화시설

: 시설(4,244.0㎡) - 문화시설

※ 추가된 문화시설(1,878㎡)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금회 결정된 순부담율(15%) 하에서 타 시설로의 변경 필요성 검토

▶ 조건사항

- 대상지 동측 완충녹지의 추가 확보계획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완충녹지 내 현황 산책로와 대상지 내·외부 특히 남측 도로가 일체적으로 연계되는 보행동선계획을 수립할 것
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변경결정 도서 참조(비치도서와 같음)

7.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37)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1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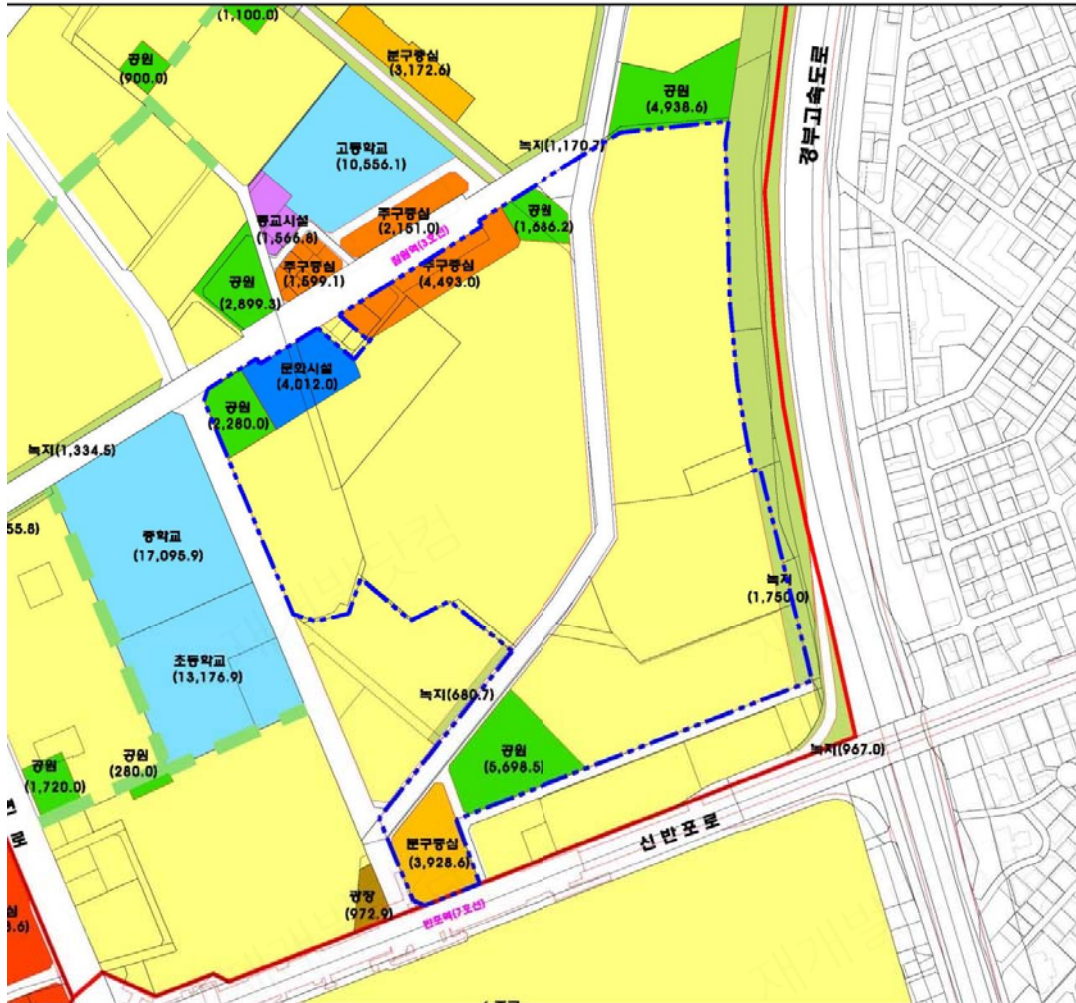
< 반포아파트지구(3주구) 개발기본계획 - 토지이용계획도 (기정) >



< 반포아파트지구(3주구) 개발기본계획 - 토지이용계획도 (변경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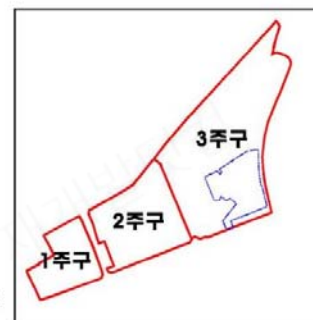
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(변경)



범례

- | | |
|------|-------|
| 주구경계 | 공 원 |
| 구역경계 | 녹 지 |
| 주택용지 | 광 장 |
| 지구중심 | 종교시설 |
| 주구중심 | 문화시설 |
| 분구중심 | 단지내보도 |
| 학 교 | |

색인도



Scale : 1/1,600
0 30 60 90